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5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위성곤·김기표·서영교

김성환 • 박균택 • 이건태

전재수 · 한병도 · 박희승

이재관 · 조인철 · 박선원

한민수 어 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'바디캠'을 운용 중임.

그러나,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'구급활동착용기록 장치'를 법률에서 정의하고,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 계 구축·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 3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4(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등)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·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능을 갖춘 기계장치(이하 이 조에서 "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"라 한 다)를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 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 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, 소리,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·저장하는 때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④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

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·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,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·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소방청장은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·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, 그 밖에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<1 전≥ 제23조의4(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・음성으로기록할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(이하이 조에서 "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"라 한다)를 사용할수 있다.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"라 한다를사용할수 있다.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하는경우로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,소리,안내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고지하여야한다. 	현 행	개 정 안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		제23조의4(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등)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·음성으로기록할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(이하이 조에서"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"라한다)를 사용할수 있다.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"라한다)를 사용할수 있다.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"라한다)를 사용할수 있다. ③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 한다)를 사용하여 기록하는경우로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, 소리, 안내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한다.

제4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·저장하는 때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④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·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,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·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소방청장은 구급활동착용기 록장치로 기록한 영상·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 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, 그 밖에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